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22 선고 2021가합11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건우, 홍요셉

변론 종결2022. 12. 21.

판결 선고2023.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1. 1. 2. 체결된 장어 매매계약을 405,928,76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928,7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0. 2. 5. '원고가 C에게 이자 월 1.5%, 변제기 2020. 12. 31.로 정하여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D은 피고의 아버지이다. D은 C에게 장어구입을 위한 용도로 2015. 1. 27. 5억 원, 2016. 2. 22. 3억 원, 2017. 8. 21. 2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21. 1. 2.경 피고와 사이에 C의 D에 대한 약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C이 기르고 있던 장어 37톤[이하 '이 사건 장어'라 한다. 갑 제7호증(세금계산서)에는 그 가액이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장어 인수 준비를 마친 후인 2021.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어를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C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장어를 피고에게 대물변제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9,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E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C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2021. 4. 30.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서 '2021. 1.경 피고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D과 피고를 만났다. D은 당시 저에게 지금 경매가 청구되었다는데 무슨 일이나'라고 물었고, 저는 'E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제를 못하니 경매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D은 '기존 채무 1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어로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 '원하시면 가져가시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한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장어를

양수할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C은 2022. 7. 6. 증인으로서는, '갑 제8호증에 써 있는 것과 같이 D이 '경매가 청구되었다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이 사건 장어를 양도한 날은 2021. 1. 2.이며, '피고와 D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 자신의 재산에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화가 왔던 것'이고, 자신은 'F조합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G조합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경매신청 사실을 알았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와 D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경위에 관하여, '피고와 D으로부터 어떻게 할거냐는 말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장어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부 사실확인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C 소유의 부동산에 최초 경매가 신청된 날은 2020. 12. 31.(이 법원 H, 채권자 E 주식회사, 청구금액 22억 원)이고, 경매개시결정일은 2021. 1. 5., 그 기입등기일은 2021. 1. 6.이며, 경매법원이 G조합, I조합(변경 전 F조합)에게 최고서를 발송한 것은 2021. 1. 12.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된 2021. 1. 2.경 피고나 D이 C 재산에 경매가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C의 진술이나 증언은 그 시기가 맞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오히려 C과 피고 모두 경매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장어를 인도한 2021. 1. 23.경으로부터 20일이 넘지 아니한 2021.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갑 제3호증(C의 G조합에 대한 부채증명원), 갑 제4호증(C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갑 제3, 4호증 모두 C이 2021. 2. 4. G조합, 전주시에 있는 J은행 K본부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C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21. 4. 30.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를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장어를 인도한 시기를 2021. 1. 2.과 2021. 1. 4.경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피고는 2022. 11. 3.자 준비서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매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 경매신청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12.

16. C이 피고에게 장어를 양도한 시기가 2021.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라고 주장을 변경하며, 갑 제16호증(CCTV 동영상 캡처 화면)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CCTV 기계 자체의 영상 보관기간이 길지 아니할 것임에도 이를 별도로 저장하여 오랫동안 보관하여 오다가 원고에게 증거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D의 관계가 통상의 사해행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특별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C은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할 당시 피고나 D에게 자신의 채무나 자산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C의 이 부분 증언은 믿을만 하다.

라) C은 전북 고창군 L(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면적만 합계 5,773m²에 이른다)와 M(토지 면적 4,950m²) 두 곳에서 각 양어장을 운영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D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여 장어를 구입하였으며, 2016. 5.경에는 그가 운영하는 N영어조합법인과 O을 통하여 P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32억 원의 자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여 장어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C은 그 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G조합, J은행에서 약 11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여러 개인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였다. 한편, D은 C에게 10억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담보를 설정받지 아니하였다. C은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20. 10.경까지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꾸준히 지급하여 오던 중 2020. 11.경 D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병 문제로 사정이 어렵다며 이자를 7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2020. 11.과 같은 해 12.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이 그 후 C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한 흔적도 없다.

위에서 본 C의 장어 양식 사업과 자금 운용 규모, C이 약 6년 동안 D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 D이 C에게 10억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돈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한 점, 이자 지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은 C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이 2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D이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은 이 사건 장어 37톤을 9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다. C은 '이 사건 장어 대부분은 약 1년 정도 키운 것이나, 작은 치어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치어의 경우 kg당 마리수가 많아 성어보다 그 가격을 높게 보아야 한다. 당시 I조합 매매가격이 kg당 17,000원 ~ 18,000원 정도였고, 이 사건의 장어의 가치가 10억 원이 넘는다'고 증언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일에 가까운 2021. 1. 5. I조합 Q에서 판매된 장어의 평균 단가는 kg당 17,000원이었다.

C이 평가하는 이 사건 장어의 가치와 피고가 평가한 가격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C 증언에 따라,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 장어의 kg당 가격을 18,000원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장어의 가격은 6억 6,600만 원(= 18,000원 × 37,000kg)이다. 이에 C이 증언하는 치어의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장어를 정당하지 않은 가격에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C의 채권자 중 피고 외에 치어가 포함된 장어를 양수할 만한 사람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만일 C이 공개시장에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치어가 포함된 장어를 판매하여 그 돈으로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는 수조 1개에서 보통 1만 수의 장어를 기를 수 있고, 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장어는 약 17만 수 정도였다고 주장하는데, 비록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37톤에 달하는 살아있는 장어를 받아 길러야 하는 사람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시설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이로부터 C이 이 사건 장어를 피고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장어를 양수한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호

판사전명재

판사고석범